제933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공정거래위원회)	1.가맹계약서 기재사항(강화) ○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조건 변경으로 협의가 요구되는 경우에 거쳐야 할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포함 ▶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2.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기준(강화) ○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요건에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것,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성실하게 협의할 것과 같은 절차적 요건을 신설 ▶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	1.비중요 2.중요
2	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기준 강화(신설) ○ 대행기관 기술인력이 연구실안전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, 해당 대행기관에 대해 적절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기준(업무정지, 시정명령 등) 마련 ▶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(국토교통부)	1.실증사업자 지정기준(신설) ○ 실증사업자 지정을 위한 기준 신설 –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장비·인력 등 세부기준 신설 ▶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2.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기준(신설) ○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을 위한 기준 신설 – 시범운용구역*에서 도심항공 교통사업을 하려는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장비 · 인력 기준을 신설 *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사람·화물의 운송, 관광비행, 비행훈련, 수색·구조·의료·응급후송 등 업무에 대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 ▶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3.책임보험의 기준(신설) ○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 교통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위해 사업 수행 기간 동안 가입 · 유지해야 하는 책임보험 기준 규정 ▶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4.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(신설) ㅇ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을 신설 ▶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	
4	위험물철도운송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위험물 용기 검사 등(신설) ㅇ 위험물 포장·용기에 대한 안전성검사 합격기준, 방법, 절차 및 면제사유 등 규정 ▶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6조의2,제6조의3 2.위험물 포장·용기 검사기관의 지정 등(신설) ㅇ 위험물 포장 용기 검사기관의 지정을 위한 기준 – 기관자격 요건, 제출 신청서 및 제출서류, 기관 지정 기준, 정기심사 기준 등 ▶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0조 3.위험물 포장·용기 검사기관의 행정처분(신설) ㅇ 위험물 포장·용기 검사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▶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1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 5.비중요 6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4.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(신설) ㅇ 철도로 위험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고용한 위험물 취급 종사자가 2년마다 8시간 안전교육을 받게 하도록 규정 ▶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2조 5.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(신설) ㅇ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- 교육시설 및 장비, 교육전담요원 기준 등 ▶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3조 6.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(신설) ㅇ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▶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4조	
5	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산림청)	1.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(신설) ㅇ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요건 규정 - 산림복원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산림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명 이상을 보유할 것 -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를 위한 장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복원 장비를 갖출 것 - 산림복원 관련 전담 부서가 있을 것 ▶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7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(신설) ㅇ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평가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– (평가기준) 정기준 충족여부, 기관 운영 및 조사자료 관리의 적정성 등 – (평가방법) 서면평가 실시, 필요시 현장 검증 실시 – (평가절차) 모니터링 기관 의견 청취 후 결과 통보 ▶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8 3.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자격(신설) ㅇ 자생식물 종자를 생산대행할 수 있는 종묘생산업자의 요건 –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– 1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(임차포지를 포함한다)를 보유한 자 – 330제곱미터 이상의 간이온실을 보유한 자(용기묘 생산에 한함) ▶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13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6	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(경찰청)	1.채용 비위 관련자 합격 등 취소(신설) ○ 채용 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,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·임용된 자에 대한 합격 및 임용 취소 근거를 명시함 ▶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2	1.비중요
7	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(환경부)	1.저공해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대상 확대(강화) ○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 대상 경유차를 확대 ▶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2.수출말소 전기차의 의무운행기간 연장 및 지원금액 회수요율 신설(강화) ○ 수출말소 전기차의 의무운행기간 연장(5년→8년) 및 대상 확대, 이에 따른 지원금액 회수 요율 신설 ▶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3.중소형 경유자동차 실도로 배출허용기준 강화(강화) ○ 중·소형 경유자동차의 실도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* (질소산화물) 0.114~0.179 → 0.088(g/km) (미세먼지 입자개수) 9×1011 → 8.04×1011(개/km) ▶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8	식품 · 의약품분야 시험 · 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시료 운송시 준수사항 적용 범위 확대(강화) ㅇ ‘시험 · 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(별표 4)’에서 시료 운송 시 준수 사항에 관한 단서 조항(시료를 채취하는 기관에 한함)을 삭제하고, – ‘품질관리 기준 평가표(별표 5)’에서 시료의 적절한 운송에 관한 단서 조항(시료를 채취하는 경우만 해당)을 삭제 ▶식품 · 의약품분야 시험 · 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별표4, 별표5 2.시험 · 검사 결과 부적합시 검증 점검표 도입(강화) ㅇ 시험 · 검사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기초자료에 ‘부적합 확인 점검표(체크리스트 형식의 검증문서 신설) 포함 ▶식품 · 의약품분야 시험 · 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별표4	1.비중요 2.비중요
9	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(문화재청)	1.행정명령 조치의 범위(신설) ㅇ 천연기념물·명승·역사환경보존지역의 보존을 위해 소유자·관리자·관리단체에게 명하는 행정명령 대상 조치를 구체화 – (제한·금지) ▲인공구조물 및 훼손된 안내판 등의 방치행위 ▲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방치행위 ▲교란생물의 방치행위 – (긴급조치) ▲ 산불 진화 또는 산림병해충 방제행위 ▲야생화된 가축·반려동물의 포획·반출 행위 ▲천연기념물인 동물 또는 식물의 질병 감염이나 개체 수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포획·채취 행위 ▲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·채취 또는 반출 행위 ▶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2.재해방지 및 복구에 필요한 조치 의무(신설) ○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소유자·관리자·관리단체에게 요청하는 재해방지 및 복구 조치의 내용을 구체화 – (재해방지) ▲위험알림·대피방법 안내판 ▲울타리 등 출입통제 시설 ▲하천·연못 등의 준설 ▲화재·산사태 등 방지시설 설치 및 천연기념물 이동·보관·보호에 관한 사항 – (재해복구) ▲수목식재·환경정화 등 응급조치 ▲휴식년제(출입 제한) 실시 등 ▶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	
10	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(문화재청)	1.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 등 (신설) ○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·관리자·관리단체가 수립해야 하는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의 내용을 구체화 – ▲전염병의 예방접종 ▲정기적인 질병진단 및 기생충 방제 ▲방역 및 방역관리대장 ▲그 밖에 질병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▶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사육(신설) ○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·관리자·관리단체가 종의 보존 및 질병예방을 위해 분산 사육해야 하는 요건을 구체화 ▶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3.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인증 선발 · 보급 기준 등(신설) ○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·보급을 위한 ▲인증기관 요건 ▲후계목 선발 및 보급기준 ▲후계목 육성·관리자 등이 해야 하는 현장점검 및 기록 관리 사항을 구체화 ▶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4.공개동굴의 실태조사(신설) ○ 천연기념물인 공개동굴의 소유자·관리자·관리단체가 매년 시행하는 ▲공개동굴 실태조사의 구체적 내용 및 보고방식을 규정 ▶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	